

## 채플에 관한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교내 및 교회예배에 적극 참여시켜 은혜받게 하고, 신앙심을 함양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자로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방침)** 이 규정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채플은 Pass제로 하되, 졸업 취득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2. 본 대학교 재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교내채플에 참석해야 한다.
3. 본 대학교 학생은 주일에 교회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7.5.1.>
4. 채플에 관한 업무는 교목실에서 주관한다.

**제3조 (출·결석 및 Pass인정)** 다음 사항을 출·결석 및 Pass로 인정한다.

1. 채플은 부흥회(학기별 영성훈련 I, II, 예수축제) 및 출석이 지정되는 각종 교내채플과 제자반(질기 및 특별행사는 채플참석)으로 한다.
2. 1호 채플은 학기당 3회 이하 결석한 경우 Pass로 하며, 3회 초과 결석자는 Fail로 한다.
3. 채플시작 정시이후에 입실한 자와 축도 전에 퇴실한 자는 지각 및 조퇴를 불허하므로 결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4. 부흥회 및 교내채플, 제자반의 초과 결석 구제를 위해 교목실에서 신앙지도와 함께 교내예배 대체 또는 적절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7.5.1.>
5. 신입생은 제자반에 출석하여 지도교수의 신앙지도를 받는다.
6. 삭제 <2007.5.1.>
7. 신학대학 학생은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학기별 영성훈련 I, II에 참석해야 한다.
8. 채플 수강안내에 따른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 (이수방법)** ① 채플의 이수는 매학기 Pass로 하며, 졸업시까지 6학기, 신학대학은 7학기로 한다. 다만 편입생은 졸업시까지 학기 2회(신학대학 편입생은 학기 3회) 참석해야 한다.

② 해외 자매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는 경우의 학기는 현지 대학교회 또는 현지 교회 출석확인서와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5조 (생활지도)** ① 매 예배 후 출·결석 사항은 학생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졸업요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중강예배 후 Pass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.

② 교회생활보고서 미 제출자와 과다 결석자, 예배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등은 교목실장

## 채플에 관한 규정(6-7-1)

---

및 교목이 상담하여 신앙지도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5.1.>

③ 세례는 교육 후 교목실에서 주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**제6조 (계절학기 지도)** 채플을 Pass하지 못한 자에게는 4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계절학기를 통해 기회를 재 부여할 수 있다.

**제7조 (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던 실천신학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4조)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제4조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4조)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)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6조)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)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채플에 관한 규정(6-7-1)

---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4조, 제5조)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